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소규모 기초지자체)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과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인가 기준을 완화하여, 해당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조합 설립인가 기준 완화(안 제4조제2항제1호, 제2호 단서 신설)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보건·의료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인가 기준을 설립동의자 수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함

나. 보건·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완화(안 제10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단서 신설)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한 보건·의료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한 인가 기준을 조합원 수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 14. ~ 5.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① (생략)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의료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 -----.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 의자가 500명 이상일 것 <단 서 신설>	1. ----- -----, <u>다만,</u> <u>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u> <u>로 한정한다)</u> 또는 <u>군에 개설</u> <u>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으</u> <u>로 한다.</u>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 의자의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단서 신설>	2. ----- ----- -----, <u>다만, 시(인구 10만</u> <u>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u> <u>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u> <u>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보건·의료조합의 의 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①	제10조의2(보건·의료조합의 의 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이하
“추가 개설인가”라 한다)의 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보건·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추가 개
설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
다.

1.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
 나마다 조합원이 500명 이상
 증가할 것 <단서 신설>

2.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
 나마다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 증가할 것 <단서 신설>

② (생략)

[illegible]

1. -----

----- . 다만, 시(인구 10만
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으로 한다.

2. -----

-----.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433